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3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 박수민·김소희·이헌승

임종득 • 이인선 • 김미애

조지연 • 박준태 • 김선교

이재관 · 김민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못지 않게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임대주택의 경우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서의 고려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 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제3조(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②			
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				
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				
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				
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	2			
리에 관한 사항(<u>「장기공공임</u>	<u>공공임대주택</u>			
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장기공공임대주택</u> 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 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